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1989년7월28일 조례 제92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등) ①종전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소관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출연금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회수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수입으로 조치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노및축산폐수
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5. 12. 28.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95.12.11 마포구
청장

나. 회부일자: 95.12.12

다. 상정일자: 제35회 정기회 제13차위원회
('95.12.28)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창수 청소
과장)

가. 제안이유

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
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과태료의 부과기준등을 보완정비하고 분
노·정화조청소 수수료의 납부 의무승계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분노의 자가수집
·운반업 신고의 구비서류중 신원증명서
제출의무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
을 도모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분노의 자가수집·운반업 신고의 구비서

류중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첨부사항 삭
제로 민원인의 편의도모(안 제8조제2항
제1호)

○분노수입·운반등의 대행업체의 대행기간
을 “3년단위”에서 “2년단위”로 단축(안
제9조제3항)

○분노·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조항 삭제(안 제14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식등을 보완정비하여 과
태료 처분의 적법성 확보(안 제19조)

○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58조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등 정
비(아 제19조 관련, 별표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
원)

○동 조례안은 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
에관한법률(1993.12.27 법률 제4656호)
등의 개정에 따라 분노처리시설등의 설
계시공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의 신설등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기준을 보완정비하고, 분노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의 대행기간을 3년
단위에서 2년단위로 하여 대행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여 과태료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
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필요한 부분을 정비보완코자 하는 것임.

○동 조례안에 입법제재상으로 불 때
(별표 1)“분노 자가수집운반업의 신고대
상 기준(법 제19조제3항 관련)”은 (별
표 1)“분노 자가수집운반업의 신고대상
기준(제8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별표
2)분노관련 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제9조
제2항 관련) 내용중 “자본금”은 “자본
금 또는 재산”으로 하며, “(별표 4)
과태료의 부과 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은 “(별표 4)과태료의 부
과 기준(제19조제4항 관련)”으로 수정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 과태료징수율이 낮을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답변요지(김창수 청소과장) : 과태료징수율 15%는 작년에 감사원의 서울시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처음 부과했기 때문이며 징수관련조례를 정비하여 내년에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려고 함.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현재 정화조청소 대행업체가 정화조청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답변요지(김창수 청소과장) :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차량을 받아 우리 구에서 직영함.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12.28 한대운 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조례안 별표 중 입법체제상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코자 함.

다. 수정 주요 골자

-안 <별표1> 분뇨 자가수집·운반업의 신고대상 기준(법 제19조제3항 관련)을 <별표1> 분뇨 자가수집·운반업의 신고대상 기준(제8조제1항 관련)으로 수정.

-안 <별표2> 분뇨관련 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내용 중 “자본금”을 “자본금 또는 재산”으로 수정.

-안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을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4항 관련)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5.12.28

제안자 : 시민보건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 별표 중 입법체제상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코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안 <별표1> 분뇨 자가수집·운반업의 신고대상 기준(법 제19조제3항 관련)을 <별표1> 분뇨 자가수집·운반업의 신고대상 기준(제8조제1항 관련)으로 수정.

-안 <별표2> 분뇨관련 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내용 중 “자본금”을 “자본금 또는 재산”으로 수정.

-안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을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4항 관련)으로 수정.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1> 분뇨 자가수집·운반업의 신고대상 기준(법 제19조제3항)을 <별표> 분뇨 자가수집·운반업의 신고대상 기준(제8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안 <별표2> 분뇨관련 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내용 중 “자본금”을 “자본금 또는 재산”으로 한다.

안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을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별표1〉 분뇨 자가수집운반업의 신고대상 기준(법 제19조제3항 관련) “내 용 생 략”</p> <p>〈별표2〉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자본금</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td> </tr> <tr> <td></td> <td></td> <td colspan="3">내 용 생 략</td> </tr> </table> <p>〈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내 용 생 략”</p>			자본금					내 용 생 략			<p>〈별표1〉 분뇨 자가수집운반업의 신고대상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원안과 같음”</p> <p>〈별표2〉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자본금 또는 재산</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td> </tr> <tr> <td></td> <td></td> <td colspan="3">(원 안 과 같 음)</td> </tr> </table> <p>〈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제4항 관련) “원안과 같음”</p>			자본금 또는 재산					(원 안 과 같 음)		
		자본금																			
		내 용 생 략																			
		자본금 또는 재산																			
		(원 안 과 같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95.12.1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과태료의 부과기준등을 보완정비하고 분뇨·정화조청소 수수료의 납부 의무승계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업 신고의 구비서류 중 신원증명서 제출의무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업 신고의 구비서류 중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첨부사항 삭제로 민원인의 편의도모(안 제8조제2항제1호)
- 나. 분뇨수집·운반등의 대행업체의 대행기간을 “3년단위”에서 “2년단위”로 단축(안 제9조제3항)
- 다.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납부의무승계 조항 삭제(안 제14조)
- 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식 등을 보완정비하여 과태료 처분의 적법성 확보(안

제19조)

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등 정비(안 제19조 관련, 별표 4)

3. 개정근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3.12.27 법률 제4656호) 제19조, 제58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1994.11.14 대통령령 제14415호) 제27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4.1 환경부령 제7호) 제55조, 제85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별도로 차량운행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8주제1항 중 “별표3”을 “별표1”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제9조제2항 중 “별표1”을 “별표2”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3년단위”를 “2년단위”로
하고, “재계약 하여야 한다”를 “재계약
할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하
고, 동조동항제3호중 “청소된 오니의 양
(오수포함)과 재투입된 중오니의 양”을
“청소된 오니의양(오수 포함)”으로 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별표2”를 “별
표3”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시설
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확인
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
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
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
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
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
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3
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
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
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고지를 한 날부
터 20일이내로 한다.

④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중별
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
료 수납(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
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한 법원
에 통보한다.

⑦구청장은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
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
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
여야 한다.

⑧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6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내에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한다.

⑨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별표1] 분뇨관련 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로 한다.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
수료 부과기준을 [별표3]으로 한다.

[별표3] 분뇨 자가수집·운반업의 신고대상
기준을 [별표1]로 하고, 동표 제목중
“(법 제19조제3항 관련)”을 “(제8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분뇨 자가수집·운반업(신
규·변경·폐업)신고서를 별지와 같이 한
다.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
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
으로 본다.

【별표2】

분뇨관련 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차 량	차 고	신고용전화	기 타
분뇨수집 운 반업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 법인:5천만 원이상 • 개인:재산 평가액 1억 원이상	전용면적 15㎡이상	• 흡입식 차량 용량의 합 계 3600ℓ이 상(탈취시설 부착)	• 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최저 보 유차고(대당) - 5톤미만:13㎡ - 5톤이상 10톤미만 :26㎡ - 10톤이상:36㎡	2대 이상	-소독조 1 조이상 -종사원 목 욕시설
정 화 조 청 소업	가. 수질환경기사· 위생사 또는 환경 기능사중 1인이상 또는 고등학교졸업 이상자로서 당해 업종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나. 정화조의 청소 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 법인:5천만 원이상 • 개인:재산 평가액 1억 원이상	전용면적 15㎡이상	• 흡입식 차량 용량의 합 계 30000ℓ 이상(탈취시 설 부착) • 오니처분용 화물차 1대 이상	• 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최저 보 유차고(대당) - 5톤미만:13㎡ - 5톤이상 10톤미만 :26㎡ - 10톤이상:36㎡	2대 이상	-소독조 1 조이상 -종사원 목 욕시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가. 오수정화시설 B.O.D(mg/ℓ)					
(1) 1일 처리용량 100㎡ 미만	: 100초과	10	20	50	100
(2) 1일 처리용량 100㎡~200㎡ 미만	: 80초과	20	50	100	100
(3)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 60초과	50	100	100	100
(4) 골프장	: 10초과	50	100	100	100
단, '96.7.1일부터 아래의 2개항목 기준적용					
-B.O.D, S.S(mg/ℓ)					
(1) 1일 처리용량 100㎡ 미만	: 80초과	10	20	50	100
(2) 1일 처리용량 100㎡~200㎡ 미만	: 60초과	20	50	100	100
(3)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 40초과	50	100	100	100
(4) 골프장	: 10초과	50	100	100	100
나. 정화조 B.O.D 제거율(%)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 50%미만		10	20	50	100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 50%미만		20	50	10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2.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BOD 1,500mg/ℓ 초과 단, '96.7.1일부터 2개항목기준적용 -BOD, SS 각 500mg/ℓ 초과	20	50	100	100
3.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오수정화시설의 미 신고자 (1) 1일 처리용량 200m ³ 미만 (2)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나. 정화조의 미 신고자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20 30 10 20	40 60 20 40	60 100 30 60	100 100 50 100
4. 법 제11조, 제26조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사용한 자 가. 오수정화시설 사용 (1) 1일 처리용량 200m ³ 미만 (2)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나. 정화조의 사용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사용 (1)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라. 간이 축산폐수정화조의 사용	10 20 5 10 20 50 100 10	20 40 10 20 40 50 100 20	30 60 20 30 60 50 100 30	50 100 30 50 100 50 100 50
5.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 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말긴 자. 가.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1) 1일 처리용량 200m ³ 미만 (2)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나. 정화조 설치 또는 변경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20 30 10 20 50	40 60 20 40 100	60 100 30 60 100	100 100 50 10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라.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1)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50	70	80	100
(2)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100	100	100	100
6. 법 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 또는 간이 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가. 기능의 정상적 유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				
(가) 1일 처리용량 200㎡ 미만	10	20	30	50
(나)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20	40	60	100
(2) 정화조				
(가)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5	10	20	30
(나)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10	20	30	50
(3) 축산폐수 정화시설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0	40	60	100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30	50	100	100
(4) 간이 축산폐수정화조	10	20	30	50
나. 방류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1) 1일 처리용량 2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6월마다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회 측정	10	20	30	50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20	40	60	100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정화조(6월마다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회 측정	5	10	20	30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10	20	30	50
(3)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6월마다 1회이상)				
(가) 최근 1년간 1회 측정	10	20	30	50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20	40	60	100
(4)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자(분기 1회이상)				
(가) 최근 1년간 1~3회 측정	20	40	60	100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30	50	100	100
다.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년 1회이상)				
(가) 1일 처리용량 200㎡ 미만	50	100	100	100
(나)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100	100	100	100
(2)정화조(년 1회 이상)				
(가)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20	50	100	100
(나)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50	100	100	100
(3) 축산폐수 정화시설(년 1회 이상)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50	100	100	100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100	100	10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4) 간이축산폐수정화조(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수시 내부청소)	20	40	60	100
라. 1일 처리용량 100㎡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 대상인원 500인 이상 정화조의 배출 방류수를 소독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50
마. 악취 발생 또는 해충 번식을 방지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				
(가) 1일 처리용량 200㎡ 미만	10	20	30	50
(나)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20	40	60	100
(2) 정화조				
(가)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5	10	20	30
(나)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10	20	30	50
(3) 축산폐수 정화시설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0	40	60	100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30	50	100	100
(4)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10	20	30	50
바.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100	100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간이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100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 용금지조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	30	40	100
9.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30	50	70	100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50	70	100	100
10.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가. 분뇨수집·운반업자	30	60	100	100
나. 정화조 청소업자	50	100	100	100
11. 법 제35조제6항 및 조례 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 금을 징수한 자	20	50	100	100
12.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 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13.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는 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14.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15. 법 제43조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 게하지 아니한 자				
(1) 기술관리인	20	40	60	100
(2) 분뇨처리 담당자 등	50	70	10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16. 법 제44조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10	30	50	100
17. 법 제45조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폐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18.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0	50	100	100
19. 법 제2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부과 기준은 위반사례 이전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m²)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지 제4호 서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고지서 영수증

시: 서울특별시 구: 마포구 (442)

주소: _____

과세물건: _____

19년 ____월 ____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서울시 납세고지서 영수증

시: 서울특별시 구: 마포구 (442)

주소: _____

과세물건: _____

19년 ____월 ____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영수증통지서

시: 서울특별시 구: 마포구 (442)

주소: _____

과세물건: _____

19년 ____월 ____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9년 ____월 ____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수납인

내원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제19조제1항)

종목명	규격	단위	종목명	규격	단위
일반쓰레기	500kg 이하	톤	일반쓰레기	500kg 이하	톤
일반쓰레기	300kg 이하	톤	일반쓰레기	300kg 이하	톤
일반쓰레기	200kg 이하	톤	일반쓰레기	200kg 이하	톤
일반쓰레기	4.1~10kg	개	일반쓰레기	4.1~10kg	개
일반쓰레기	11~20kg	개	일반쓰레기	11~20kg	개
일반쓰레기	21~30kg	개	일반쓰레기	21~30kg	개
일반쓰레기	31~40kg	개	일반쓰레기	31~40kg	개
일반쓰레기	41~50kg	개	일반쓰레기	41~50kg	개
일반쓰레기	51~60kg	개	일반쓰레기	51~60kg	개
일반쓰레기	61~70kg	개	일반쓰레기	61~70kg	개
일반쓰레기	71~80kg	개	일반쓰레기	71~80kg	개
일반쓰레기	81~90kg	개	일반쓰레기	81~90kg	개
일반쓰레기	91~100kg	개	일반쓰레기	91~100kg	개
일반쓰레기	101~110kg	개	일반쓰레기	101~110kg	개
일반쓰레기	111~120kg	개	일반쓰레기	111~120kg	개
일반쓰레기	121~130kg	개	일반쓰레기	121~130kg	개
일반쓰레기	131~140kg	개	일반쓰레기	131~140kg	개
일반쓰레기	141~150kg	개	일반쓰레기	141~150kg	개
일반쓰레기	151~160kg	개	일반쓰레기	151~160kg	개
일반쓰레기	161~170kg	개	일반쓰레기	161~170kg	개
일반쓰레기	171~180kg	개	일반쓰레기	171~180kg	개
일반쓰레기	181~190kg	개	일반쓰레기	181~190kg	개
일반쓰레기	191~200kg	개	일반쓰레기	191~200kg	개
일반쓰레기	201~210kg	개	일반쓰레기	201~210kg	개
일반쓰레기	211~220kg	개	일반쓰레기	211~220kg	개
일반쓰레기	221~230kg	개	일반쓰레기	221~230kg	개
일반쓰레기	231~240kg	개	일반쓰레기	231~240kg	개
일반쓰레기	241~250kg	개	일반쓰레기	241~250kg	개
일반쓰레기	251~260kg	개	일반쓰레기	251~260kg	개
일반쓰레기	261~270kg	개	일반쓰레기	261~270kg	개
일반쓰레기	271~280kg	개	일반쓰레기	271~280kg	개
일반쓰레기	281~290kg	개	일반쓰레기	281~290kg	개
일반쓰레기	291~300kg	개	일반쓰레기	291~300kg	개
일반쓰레기	301~310kg	개	일반쓰레기	301~310kg	개
일반쓰레기	311~320kg	개	일반쓰레기	311~320kg	개
일반쓰레기	321~330kg	개	일반쓰레기	321~330kg	개
일반쓰레기	331~340kg	개	일반쓰레기	331~340kg	개
일반쓰레기	341~350kg	개	일반쓰레기	341~350kg	개
일반쓰레기	351~360kg	개	일반쓰레기	351~360kg	개
일반쓰레기	361~370kg	개	일반쓰레기	361~370kg	개
일반쓰레기	371~380kg	개	일반쓰레기	371~380kg	개
일반쓰레기	381~390kg	개	일반쓰레기	381~390kg	개
일반쓰레기	391~400kg	개	일반쓰레기	391~400kg	개
일반쓰레기	401~410kg	개	일반쓰레기	401~410kg	개
일반쓰레기	411~420kg	개	일반쓰레기	411~420kg	개
일반쓰레기	421~430kg	개	일반쓰레기	421~430kg	개
일반쓰레기	431~440kg	개	일반쓰레기	431~440kg	개
일반쓰레기	441~450kg	개	일반쓰레기	441~450kg	개
일반쓰레기	451~460kg	개	일반쓰레기	451~460kg	개
일반쓰레기	461~470kg	개	일반쓰레기	461~470kg	개
일반쓰레기	471~480kg	개	일반쓰레기	471~480kg	개
일반쓰레기	481~490kg	개	일반쓰레기	481~490kg	개
일반쓰레기	491~500kg	개	일반쓰레기	491~500kg	개
일반쓰레기	501~510kg	개	일반쓰레기	501~510kg	개
일반쓰레기	511~520kg	개	일반쓰레기	511~520kg	개
일반쓰레기	521~530kg	개	일반쓰레기	521~530kg	개
일반쓰레기	531~540kg	개	일반쓰레기	531~540kg	개
일반쓰레기	541~550kg	개	일반쓰레기	541~550kg	개
일반쓰레기	551~560kg	개	일반쓰레기	551~560kg	개
일반쓰레기	561~570kg	개	일반쓰레기	561~570kg	개
일반쓰레기	571~580kg	개	일반쓰레기	571~580kg	개
일반쓰레기	581~590kg	개	일반쓰레기	581~590kg	개
일반쓰레기	591~600kg	개	일반쓰레기	591~600kg	개
일반쓰레기	601~610kg	개	일반쓰레기	601~610kg	개
일반쓰레기	611~620kg	개	일반쓰레기	611~620kg	개
일반쓰레기	621~630kg	개	일반쓰레기	621~630kg	개
일반쓰레기	631~640kg	개	일반쓰레기	631~640kg	개
일반쓰레기	641~650kg	개	일반쓰레기	641~650kg	개
일반쓰레기	651~660kg	개	일반쓰레기	651~660kg	개
일반쓰레기	661~670kg	개	일반쓰레기	661~670kg	개
일반쓰레기	671~680kg	개	일반쓰레기	671~680kg	개
일반쓰레기	681~690kg	개	일반쓰레기	681~690kg	개
일반쓰레기	691~700kg	개	일반쓰레기	691~700kg	개
일반쓰레기	701~710kg	개	일반쓰레기	701~710kg	개
일반쓰레기	711~720kg	개	일반쓰레기	711~720kg	개
일반쓰레기	721~730kg	개	일반쓰레기	721~730kg	개
일반쓰레기	731~740kg	개	일반쓰레기	731~740kg	개
일반쓰레기	741~750kg	개	일반쓰레기	741~750kg	개
일반쓰레기	751~760kg	개	일반쓰레기	751~760kg	개
일반쓰레기	761~770kg	개	일반쓰레기	761~770kg	개
일반쓰레기	771~780kg	개	일반쓰레기	771~780kg	개
일반쓰레기	781~790kg	개	일반쓰레기	781~790kg	개
일반쓰레기	791~800kg	개	일반쓰레기	791~800kg	개
일반쓰레기	801~810kg	개	일반쓰레기	801~810kg	개
일반쓰레기	811~820kg	개	일반쓰레기	811~820kg	개
일반쓰레기	821~830kg	개	일반쓰레기	821~830kg	개
일반쓰레기	831~840kg	개	일반쓰레기	831~840kg	개
일반쓰레기	841~850kg	개	일반쓰레기	841~850kg	개
일반쓰레기	851~860kg	개	일반쓰레기	851~860kg	개
일반쓰레기	861~870kg	개	일반쓰레기	861~870kg	개
일반쓰레기	871~880kg	개	일반쓰레기	871~880kg	개
일반쓰레기	881~890kg	개	일반쓰레기	881~890kg	개
일반쓰레기	891~900kg	개	일반쓰레기	891~900kg	개
일반쓰레기	901~910kg	개	일반쓰레기	901~910kg	개
일반쓰레기	911~920kg	개	일반쓰레기	911~920kg	개
일반쓰레기	921~930kg	개	일반쓰레기	921~930kg	개
일반쓰레기	931~940kg	개	일반쓰레기	931~940kg	개
일반쓰레기	941~950kg	개	일반쓰레기	941~950kg	개
일반쓰레기	951~960kg	개	일반쓰레기	951~960kg	개
일반쓰레기	961~970kg	개	일반쓰레기	961~970kg	개
일반쓰레기	971~980kg	개	일반쓰레기	971~980kg	개
일반쓰레기	981~990kg	개	일반쓰레기	981~990kg	개
일반쓰레기	991~1000kg	개	일반쓰레기	991~1000kg	개

구제방법
 이의신청: 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기가 경과하면 다량폐기물 및 내원생활폐기물은 5% 규격당 통 선내대금운 상임운행 일반인재용이 기산됩니다.
 위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자의 재산유 영유합니다.

채원용 가능등록은 지정요일 지정시간에 분리배출하여 주시고, 상리기는 규격당통에 담아 묶어서 수 시시간에 내주세요.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배출물 수집·운반수수료 (제19조제1항제1호)표(보안)

종류	비고	비고
다량 일반 폐기물	5,100	생방 합하여 오물의 10% 범위안에서 기산할 수 있다.
폐기물 운반비용	8,800	
가수출내거부	10,000	생방 합하여 오물의 20% 범위안에서 기산할 수 있다.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배출물 처리비 부과기준 (제19조제2항관련)

종류	비고	비고
다량 일반 폐기물	5,180	
폐기물 운반비용	2,170	
가수출내거부	3,500	
건축물배출물	8,000	

이항목은 수납액에 (차액) 고시제 반영할 경우 변동비율에 의해 기산함.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배출물 처리비 부과기준은 분리·운반 및 판매로 하여 발생되는 수익에서 배출처에서 내는 다량폐기물과 관련 구분 등록된 수익금에 차액을 차감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4조제2항은 처리비 수납 후 반환하는 다량배출물은 다량폐기물에서 기산 금액에 따라 수납액이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간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일자		⑦ 과태료금액
	⑧ 과태료 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수 신 :

발 신 : 마 포 구 청 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통보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통보합니다.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고지일자		⑤ 과 태 료 금 액	
	⑥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 일 자	

-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사본1부.
2. 담당 공무원 의견서 1부. 끝.

210mm×297mm(신문용지54g/m²)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마포구세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고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④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수납(채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후 담당 공무원의 의견 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⑦구청장은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⑧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